

이 자료는 지난 8월 1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건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편집자 주 -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상품권 포함 반대 건의

대한석유협회

재정부 공고 제 2002-85호(2002. 7. 26)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임.

동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상품권을 포함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상품권 발행자 또는 상품권 발행자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권의 신용카드 판매 허용시 정유사 상품권을 포함한 전체 상품권의 판매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첫째, 상품권의 신용카드 판매 허용시 자금유통을 위한 속칭 '카드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상품권 발행자 또는 상품권 발행자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하고는 있으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자의 대부분이 급전 유통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건전한 국민 소비생활의 왜곡을 초래할 소지가 높은 것이

사실임.

둘째, 사채업자의 상품권 '카드깡'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 등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들의 세금포탈 등으로 지하시장의 규모가 기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셋째, 상품권 유통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상품권의 이미지 실추 등으로 상품권 자체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됨. 즉, 현재의 신용카드 서비스와 관련한 실정 및 신용카드 사용의 일부 폐해를 감안할 때, 상품권의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가 허용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리 업계는 판단하고 있음.

이에 우리 업계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상품권 유통시장의 정착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상품권 판매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

만약 개정안대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강력한 보완책이 마련된 후 시행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